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6. 24 선고 2021가합103467 판결 [연대보증금 청구]

전 문

원 고 사우디아라비아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건한

피 고 1. B 주식회사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우

변 론 종 결 2022. 5. 20.

판 결 선 고 2022. 6.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729,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사(이하 '피고 회사 지사'라 한다)의 지사장은 소외 E이며, 피고 C은 E의 딸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 지사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 지사에 금전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18. 8. 10. 각 대여금 및 아래 표의 추가금을 합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 회사 지사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위 변제기를 수표지급기일로 하고, 각 대여금 및 추가금을 합한 금액을 각 액면금액으로 한 수표 4장을 발행하였다.

[금액 단위 : 사우디아라비아 리얄(SAR), 이하 '리얄'이라 한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	추가금	변제기 (수표지급기일)	수표 액면금액
1	2018. 2. 11.	500,000	165,000	2018. 8. 10.	665,000
2	2018. 3. 11.	500,000	165,000	2018. 8. 10.	665,000
3	2018. 4. 10.	500,000	165,000	2018. 8. 10.	665,000
4	2018. 5. 14.	300,000	99,000	2018. 8. 10.	399,000
합계		1,800,000	594,000		2,394,000

다. 피고는 2018. 8. 14.경 원고에게 액면금액 263,939리얄, 지급기일 2018. 10. 10.로 한 수표 1장을 추가로 발행하였다(이하 '추가 발행 수표'라 한다).

라. 피고들은 2018. 10. 21.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 지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 총 2,657,939리얄에서 피고 회사 지사가 2019. 1. 31.까지 변제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 회사 지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변제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순번	변제일자	변제액수(리알)
1	2018. 11. 1.	665,000
2	2018. 11. 1.	235,000
3	2019. 7. 18.	300,000
4	2019. 9. 20.	400,000
5	2019. 9. 27.	150,000
6	2019. 10. 6.	150,000
7	2019. 10. 15.	150,000
8	2019. 10. 20.	150,000
9	2019. 10. 31.	150,000
합 계		2,350,000

바.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에 관한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라는 데에 다툼이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 지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계약에 따라 2018. 8. 10.까지 2,394,000리알, 추가 발행 수표의 지급기일인 2018. 10. 10.까지 263,939리알 총 2,657,939리알(= 2,394,000 + 263,939)을 반환 내지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2,657,939리알에서 피고 회사 지사가 기변제한 2,350,000리알을 제외한 나머지 307,939리알[한화로는 96,729,798원(= 307,939 × 2021. 11. 9.자 환율 314.1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 계약에서 정한 추가금 및 추가 발행 수표의 수표금(이하 '이 사건 추가금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금 등의 지급 약정 중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 지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이미 2,350,000리알을 지급하였고, 이는 이 사건 대여금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채무인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변제로 소멸한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자제한법의 적용 여부

1) 일반적으로 이자라 함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서 그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따라 일정기마다 이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의미한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할인금, 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023 판결 참조).

나아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여금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은 변제기까지 일정 기간 사용된 후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일정비율(33%)로 계산된 추가금과 합하여 반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이 사건 대여금과 추가금의 구조는 일반적인 대여금 약정에서의 대여 원금 및 이자의 구조와 유사한 점, ②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 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주채무에 관하여 '피고 회사 지사가 원고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원고로부터 차입한 공사자금 및 이자 총 2,657,939리알'이라고 하여, 이 사건 추가금 등을 '이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 지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손실, 부가가치세, 자카트를 보전하여 주고자 이 사건 추가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지 이자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영업손실 등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편 원고가 영업손실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특정액수로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이 사건 추가금을 요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이 사건 추가금 등은 이자와 동일한 명목의 금전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손실의 보전이나 자카트(종교세) 지급은 그 성질상 채권자인 원고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추가금 등은 그 성격상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이자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이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추가금 등의 지급 약정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고, 위 약정 당시인 2018. 2. 11. 내지 같은 해 8. 14. 적용된 이자제한법 제2조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최고이율은 연 24%이므로, 위 약정은 위 최고이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나. 변제충당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 회사 지사로부터 위 1의 마.항과 같이 합계 2,350,000리알을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와 피고 회사 지사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나 지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 지사가 위와 같이 변제한 금원을 민법 제479조,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여원리금 전액이 변제되었다.

다. 소결

따라서 주채무인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변제로 전부 소멸한 이상,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연대보증금 채무도 소멸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원, 판사 유가형, 판사 김성하

별지